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528

발의연월일: 2021. 3. 4.

발 의 자:윤재옥·태영호·김희곤

최춘식 · 김승수 · 정희용

양금희 · 홍문표 · 정진석

김상훈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술단체가 학술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학술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해 주고 있으나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하지만 비영리단체인 학술단체를 통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연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행과 같은 지방세의 감면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술단체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 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연구활동을 활성화하 려는 것임(안 제45조제1항).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5조(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에	제45조(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대한 감면) ①
정하는 학술단체가 학술연구사	
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	
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	
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학술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	
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	
각 <u>2021년 12월 31일</u> 까지 면제	<u>2024년 12월 31일</u>
한다. 다만, 제45조의2에 따른	
단체는 제외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